



MVPR-2008-04

VIP REPORT

2008. 2. 13.

■ 중국 신 법제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 2008년, 중국 경제·산업 관련법을 중심으로

발행인 : 김주현

편집주간 : 유병규

편집위원 : 이부형, 홍순직, 주원, 허만율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030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01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중국 신 법제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Executive Summary	i
1. 중국 신법 시행과 배경	1
2. 6대 신법의 주요내용과 영향	3
3.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	13

1. 중국 신법 시행과 배경

최근 들어 중국에 진출한 일부 국내 기업들이 ‘야반도주’하는 극단적 철수방법을 선택할 정도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기업 관련 제도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에도 중국의 경제·산업 관련 신 법규가 대거 시행될 예정이어서 중국 진출 기업의 경영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2008년은 중국이 개혁개방 30주년이 되고,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 후반기에 진입하면서 양적 경제성장에서 질적 경제성장으로의 전환을 본격화 하는 해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구조 고도화’, ‘자원절약형, 친환경 사회건설과 위원 개방전략’은 중국의 경제정책 기조가 되어 법제 변화로 구체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법제환경 변화는 우리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최근 제정 또는 개정된 경제 관련 6대 법규 내용과 법제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6대 신법의 주요내용과 영향

① 신 기업소득세법

(배경과 의미) 개혁개방 이후 외자 유치를 위해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부여하던 세제혜택으로 인해 내자 기업에 대한 역차별 여론이 거세졌다. 신 기업소득세법의 시행은 내·외자 기업 간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자본의 선별적 유치에 의미가 있다.

(주요내용) 신 기업소득세법은 내·외자 기업에 각각 적용하던 33%와 15% 기업소득세율을 25%로 단일화 하고 세제혜택 부여기준을 지역에서 산업으로 전환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 외에도 외자기업에 적용하던 ‘2년 면제 3년 반감’(면 3감 : 兩免三減), 수출 주도형 기업에 대한 50% 세액감면 등 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관련기업 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과 세무 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향) 신 기업소득세법의 시행으로 중국진출 우리기업들은 정도경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 IT, ET, BT 등 하이테크 산업과 서비스 및 R&D 센터의 중국 진출기회를 확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반면, 우리기업의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세무조사 확대에 따른 암묵적 비용이 상승하며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회피가 어려워져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② 신 노동계약법

(배경과 의미) 경제성장 과정에서 사용자 우선의 정책적 편향성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확대는 사회계층 간 모순을 악화시켰다. 신 노동계약법 시행의 의미는 고용관계에 있어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소득증대를 통해 소비주도형 경제성장 방식으로의 전환과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있다.

(주요내용) 신 노동계약법은 피고용자에 대한 장기고용 보장, 퇴직 시 경제적 보상금의 지급과 고용, 의료 보험 가입 의무화 및 노동규칙 제정 시 노동자 의견을 반영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향) 신 노동계약법의 시행으로 기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동화의 실현을 통해 생산성 형상을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노동경직성이 심화되고 인건비가 상승하여 기업의 인력관리 난이도와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 진출 우리나라 기업의 영세성과 저렴한 인건비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감안할 때,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본다.

③ 반독점법

(배경과 의미) WTO 가입 이후 주요산업에 대한 국유기업 독점현상에 대한 개방 압력의 가중, 외국기업의 시장점유율 급증과 지방보호주의 폐단의 지속 등으로 인해 반독점법의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반독점법은 시장 지향적 경쟁체제의 확립과 전략산업에 대한 보호가 그 목적이이다.

(주요내용) 반독점법은 동일 업종에 속한 기업 간 담합,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지방정부의 행정 권력을 이용한 지역보호주의에 대한 규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 외국기업이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을 추진 시에는 의무적으로 국가안전심사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영향) 반독점법의 시행으로 외국기업은 과거 국유기업 독점 하에 있던 주요산업으로의 진출 기회를 획득하고 지역보호주의 타파에 따라 내수시장 확대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반면, 반도체, 통신, LCD, 건설기계 등 분야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된 규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의 기업 인수합병은 중국 기업 대상 인수합병 추진 시 받아야 하는 국가 안전심사 규정에 의해 제약받을 전망이다.

④ 에너지절약법

(배경과 의미) 고속 경제성장에 따른 중국 내 에너지 수요의 급증과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및 대기환경에 대한 규제 강화는 중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높여 환경비용을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에너지절약법이 도입되었다.

(주요내용) 에너지절약법은 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와 감시대상을 명확히 하고 표준체계와 관리제도 및 위반 시 법적책임과 목표달성을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인센티브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건설, 교통, 철강, 화공 등 산업을 중점 감독 대상에 포함하고 고정자산 투자 시 에너지 절약 관련 평가제와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제를 도입하였다.

(영향) 에너지절약법의 도입으로 국내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 생산업체들이 중국시장에서 약진할 전망이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과 에너지 소비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로 철강, 석유화학 및 교통운수 관련 업종의 고전이 예상된다. 또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목표로 유수의 외국 기업과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자동차 및 장비제조 기업들의 연비 향상을 둘러싼 개발비용의 상승이 예상된다.

⑤ 순환경제법

(배경과 의미) 자원고갈 우려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과 환경파괴에 따른 비용증가는 중국경제의 지속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순환경제법의 도입은 과잉투자를 억제하고 자원사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 소모형 산업구조를 자원절약형·친환경 산업구조로 재편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주요내용) 순환경제법은 '감량화', '재활용', '자원화'를 목표로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정부의 행동지침, 표준체계, 강제요건, 인센티브 및 위반 시의 법적 책임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원소모가 많고 환경오염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기업 발전을 제한하고 제품의 수명주기 동안 발생하는 환경영향에 대해 제품 생산자와 수입업자에게 경제적,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등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영향) 순환경제법의 시행으로 기업들이 자원사용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쟁력 축적이 가능하며 자원 재활용 관련 기업의 중국 진출과 장비 및 기술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제품 회수와 환경보호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범위가

Executive Summary

확대되어 철강, 석유화학, 건전지 등 제조업체의 폐기물, 폐수 등에 대한 회수처리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회용품 가공·생산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로 관련 업체들의 존립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⑥ 신 수오염방지법

(**배경과 의미**) 수자원 부족, 수질오염의 심각화, 수질오염 사고의 빈번한 발생 및 높은 준법비용은 수오염방지법 개정 이유이다. 신 수오염방지법은 주민의 식수안전을 보장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경제사회의 발전을 지속시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주요내용**) 수오염방지법은 오염물질 배출 허가제와 총량제를 실시하고 오염원 통제과정에서 정부 책임을 강화하며 수질환경 정보의 통합적 공시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염물질의 배출과 관련된 기업체, 병원 등에 배출허가 취득과 측량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역의 배출총량 기준 위반 시에는 벌금, 사업장 폐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향**) 수오염방지법의 시행은 국내 오수처리 시설과 정화설비 관련 업체의 중국 진출과 관련 기술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석유화학, 모피, 섬유 등 관련 업종이 주종을 이루는 우리나라 기업의 오수처리 시설도입과 검사 비용이 대폭 증가하여 채산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3.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중국의 법제환경 변화는 우리 기업들에게 위협요인인 동시에 도약의 기회가 된다. 예를 들어 기업소득세법의 시행은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반면에 세제혜택 부여 기준을 지역에서 산업으로 전화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IT, 서비스, R&D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청신호가 될 수 있다. 또한 노동계약법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우리 기업들에게 단기적으로는 위협요인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가능케 하는 측면이 있다. 그 외에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관한 법들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바가 있다. 이에 우리 정부와 기업은 다음과 같은 대응이 요구된다.

(정부의 대응)

첫째, 정부는 국내 IT, 서비스, R&D 등 첨단 기술과 서비스 업체의 중국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산업 관련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사업철수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이전·철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중국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 금융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수도권규제' 등을 완화시킴으로써 지금과 같이 우리기업의 무단철수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국 진출 기업의 문제점을 제때에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선도해 나아가야 한다. 넷째, 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경제정책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들이 중국 경제정책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함으로써 기업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대응)

첫째, 환경변화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사업기회의 발굴과 성장 동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과거 중국 내 국유기업의 독점 하에 있던 유망 사업 분야로의 진출기회 확보와 내수시장 확대의 길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둘째,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해야 한다. 과거의 저임금, 가공무역 위주의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하이테크 분야로의 롱점프 (long-jump^형) 사업 다각화를 통해 전략 중심을 고부부가치의 분야로 사업영역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셋째, 독자형태의 법인성격을 중국기업과의 합작 또는 합자 형태로 전환하고 인력과 시장의 현지화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외국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와 차별을 회피하고 내수시장 공략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여 내수비중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단, 경쟁업체와의 가격정보 교환이나 생산량 조율 등 반독점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합작행위와 중국기업 대상 인수합병 시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 내 중서부지역(동북지역 포함) 혹은 원가경쟁력이 있는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의 사업체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기업들이 밀집한 연해개방지역에서 중국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세제와 행정절차 상 혜택이 상존하는 중서부지역으로의 사업장 이전은 인건비 절감과 생산인력 확보에 유리할 것이다. 그 외에도 글로벌 제조기업의 대안적 생산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나 개성공단으로 이전함으로써 제품의 원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안 지역의 인프라 미비로 인한 물류비용 상승 등 불리한 요인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Executive Summary

<중국 신 법제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중국 신법 시행과 배경	시대적 배경	2008년은 중국이 개혁개방 30 주년, '11차 5개년 계획' 후반기에 진입하는 해임
	정책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구조 고도화 실현 • 자원절약형, 환경 친화형 경제사회 건설 • 원원(Win-Win) 개방전략 실시

6대 신법의 주요내용과 영향	6대 신법	의미	키워드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① 기업 소득세법	조세형평성	세율 단일화, 혜택 축소	-	조세부담 증가
	② 노동계약법	노동자 권익 보호	장기 고용 보장, 경제적 보상	인력확보 용이	인력관리 난이 도 증가, 인건 비 상승
	③ 반독점법	시장 경쟁제제 확립	카르텔 형성, 시장 지배 적 지위 남용, 경제력 집중, 행정 권력에 의한 경쟁 제한,	신규 사업진출 내수시장 확대	시장확대 제한 M&A 난이도 증가
	④ 에너지 절약법	에너지 사용 효율성 제고	목표책임제, 평가제도	가전업체 약진	철강, 석유화 학 등 업종 규 제 직면
	⑤ 순환경법	자원사용 효율 성 제고	감량화, 재활용, 자원화	경쟁력 확보, 관련기업 중국 진출, 장비와 기 술 수출 확대	폐기물, 폐수 등에 대한 회 수처리 비용 상승
	⑥ 수오염 방지법	수자원, 환경 보호	배출허가제, 총량 제한제	오수, 정화 설비 및 기술 수출	오수처리 설비 도입과 검사비 용 증가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정부의 대응	첨단 기업의 중 국 진출 지원	중국진출 기업 의 미전, 철수 지원 대책 마련	중국진출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 강 화	중국 경제, 산업 관련 데이터베이 스 구축
	기업의 대응	환경 변화를 발 전 기회로 활용	기술개발 집중 투자, 고부가가치 산 업으로 전환	합작, 합자 형태로 기업형태 전환	중서부지역 혹은 해외로 사업체 이전

중국 신 법제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1. 중국 신법 시행과 배경

-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이 규정한 '산업구조 고도화', '자원절약, 환경친화형 사회건설'과 '원원 개방전략¹⁾'은 중국의 경제정책 기조가 되어 법제 변화로 나타남
 - 중국은 2007년 중 총 22건의 경제관련 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예정이므로 중국진출 외국기업의 투자환경에 변화가 예상됨
 - 대표적인 법안들로는 '신 기업소득세법', '노동계약법', '반독점법' '신 에너지 절약법', '순환경제법'과 '신 수오염방지법' 등이 있음

<2008년 중국 신규시행 법규 요약>

	법규	시행시기 ²⁾	목적	키워드
1	新 기업소득세법	2008.1.1	공평한 경쟁 환경 조성	기업 소득세율 25%로 통일
2	노동계약법	2008.1.1	노동자 권리 강화	장기고용계약 체결, 경제보상금 지급기준 강화
3	반독점법	2008.8.1	시장 지향적 환경 조성	행정 독점, 경제력 집중 감독관리 강화, 반독점관련 정부기구 설치
4	新 에너지절약법	2008.4.1	에너지절약	목표책임제 및 에너지절약 심사 평가제 도입
5	순환경제법	2008.2 (통과예정)	환경보호, 자원절약	자원재생 기준 도입, 환경보호평가 지표와 심사제도 실시
6	新 수오염방지법	2008년 중(통과예정)	환경보호	수자원 오염방지계획, 환경평가 실시 및 오염물 배출비용 규정

- 1) '원원 개방전략'은 무역구조를 개선하고 외자 이용 시 투자자본의 질을 높이며 국내 자본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유도함으로써 상생의 개방방식을 추구
- 2) 순환경제법과 신 수오염방지법은 2007년 중 초안 작성을 완료하고 의견수렴 중임

-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법제환경 변화는 우리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함
 - 2002년 이후 한국은 대중국 최대 직접투자국이 되었으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해외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음
 - 중국은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과 최대 교역국이 되었으며, 2007년에는 최대 수입국이 될 것으로 분석됨
 - 중국 진출 우리나라 기업의 동부 연해지역 편중현상,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성 및 규모의 영세성은 법제환경 변화에 취약

<중국 진출 우리나라 기업 현황 및 취약점>

구분	현황	취약점
지역	장쑤성 32.3%, 산동성 24.6%, 텐진시 8.5%, 베이징시 8.1%, 상하이시 6.5%, 라오닝성 5.4%, 광둥성 3.8% 등	법제 변화에 민감한 지역적 분포 경쟁심화, 정책적 혜택 축소 지역 위주의 분포
산업	1992년 이후 제조업 비중은 줄곧 80%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2006년에는 81.3%를 차지, 이는 우리나라 해외 직접투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평균 비중 47.2%를 큰 폭으로 상회	산업구조 재편 대상 환경비용과 인건비 상승에 취약
규모	중국 현지에 설립한 16,000개 법인 중 95%가 중소기업	법제 환경 변화에 적절한 대응력 결핍(자금, 정보)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007년 11월호.

- 이에 본 보고서는 최근 제정 또는 개정된 경제 관련 법규 내용과 법제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중국진출 기업에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중국의 경제관련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배경을 분석하고 향후 경제관련정책 기조를 예견함
 - 경제관련 법규의 주요내용과 개정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외국기업의 대중국 투자환경 변화를 분석함
 - 경제관련 법제환경 변화가 중국진출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함

2. 6대 신법의 주요내용과 영향

○ 신 기업소득세법

- (배경과 의미) 개혁개방 초기 외자유치를 위해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상 혜택이 내·외자 기업 간 조세불평등의 원인이 됨
 - 이를 폐지하여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자본에 대한 선별적 유치에 의미가 있음
- (주요내용) 내·외자 기업 간 차등 적용하던 기업소득세율(법인세율)을 단일화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³⁾하는 한편, 세제혜택 부여기준을 지역에서 산업으로 전환
 - 종전 외자기업과 내자기업에 각각 적용하던 15%와 33%의 기업소득세율을 25%로 단일화 함
 - 외자기업에 적용하던 '2년 면제 3년 반감(2면3감 : 兩免三減)', 수출주도형 기업에 대한 50% 감면우대 등 세제혜택을 폐지하거나 축소
 -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기준을 경제특구, 연해개방구 등 지역주의에서 하이테크, 중점육성사업 등 산업주의로 전환
 - 관련기업 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과 세무 조사를 강화

<신 기업소득세법 개정 전후 세율과 혜택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외자기업	세율단일화	일반기업 : 33% 연해개방구 : 24% 경제특구 : 15%	일반기업 : 25% 소형기업 : 20% 하이테크 : 15%
	세제혜택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부합 기업 : 2면 3감 중서부지역 외자기업 : 2면3감+3감 등	
내자기업	일반기업 : 33% 소형기업 : 27%, 18%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참조.

3) 기업소득세율 인상 이외에도 수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율 인하와 차등 환급 조치는 가공무역 위주의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임

- 단, 중서부지역(내륙)의 '장려'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15%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 '5+1지역⁴⁾' 내의 신규설립 첨단기술 기업에 대해 우대세율 적용, 텐진 빈하이신구(濱海新區) 내의 첨단기술 업종에는 15%의 세율 적용
- **(영향)** 세제혜택의 감소로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세무조사의 확대로 관련비용이 상승하여 기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외자기업에 대한 명목 기업소득세율이 종전 15%에서 25%로 상향 조정되어 당기순이익은 10% 이상 감소할 것임
 - 관련기업 간 거래에서 이전가격과 세무조사 확대는 외자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것임
 - 외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율의 단계별 조정으로 단기적으로 기 진출 기업에 대한 충격은 제한적이나, 신규 진출 기업은 25%의 세율을 부담해야 함

<기 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단계별 적용 세율>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과도세율	17%	19%	21%	23%	25%

자료 : 2008 중국 경제정책 대응 전략, KOTRA.

○ 신 노동계약법

- **(배경과 의미)** 경제성장 과정에서 사용자 우선의 정책적 편향성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확대가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
 - 단기 노동계약의 보편화는 노동자의 직업 안정 기반을 취약하게 하고 기업의 장기 발전에도 불리할 것으로 판단
 - 1979년부터 2005년까지 GDP 대비 근로소득 비중은 16.1%에서 10.9%⁵⁾로 하락하여 투자주도형 성장에서 소비주도형 성장으로의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

4) '5+1 지역'은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산터우(汕頭), 샤먼(廈門), 하이난(海南)을 포함한 5 곳의 경제특구와 상하이 푸동(浦東)개발구를 의미함

5) 선진국의 GDP 대비 근로소득 비중은 54~65% 사이이며, 중국 경제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도의 경우도 그 비중이 25% 이상임

- **(주요내용)** 노동자에 대한 장기고용 보장, 경제적 보상 확대 및 지위 강화를 통해 고용계약 관계에 있어 사용자 우선주의에서 피고용자 우선주의로 전환
 - 동일 사업장에 10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동법 시행 이후 2회 연속 고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기 고용계약 체결을 의무화 함
 - 고용계약 체결 시 피고용자에 대한 의료 및 고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위반 시의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피고용자 퇴직 시 경제적 보상금 지급제도를 도입
 - 노동자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로시간, 휴가, 복지 등 규칙제도 제정 시에는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불리한 규칙제도에 대해 노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신 노동계약법 주요내용>

	주요내용
장기고용 보장	동법 시행 이전부터 해당 기업에 연속적으로 10년 이상 근속하거나 2008년부터 2회 연속 고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 시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함
경제적 보상 확대	피고용자 퇴직 시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의료 및 고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함
노동자 지위 강화	노동자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대사항의 결정 시에는 공회(노조)와 협의해야 함

자료 : 2008 중국 경제정책 대응전략, KOTRA.

- **(영향)** 노동계약법의 시행으로 기술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자동화 실현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반면, 노동경직성이 심화되고 인건비가 상승하여 기업의 인력관리와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장기고용계약 체결로 인력관리의 유연성이 감소하고 생산라인의 노령화 및 인건비 상승이 예상됨
 - 의료 및 고용 보험 가입과 퇴직 시 경제적 보상 의무화로 비용 부담 가중
 - 보수, 근로시간, 휴가 관련 노동규칙 제정 시 노사협의 의무화로 인사관리 난이도 증가

○ 반독점법

- (배경과 의미) WTO 가입 이후 주요 산업에 대한 국유기업 독점현상에 대한 통상압력을 불식시키고 지방보호주의와 외국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의 급속한 확대에 따른 폐단을 타파하기 위함
 - 2001년 WTO 가입 이후,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요 산업에 대한 국유 기업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거세짐
 - 근래 통신설비, 휴대폰, 필름, 타이어 등 주요 산업에서 외국기업의 시장점유율이 급속도로 확대
 - 2004년 이전까지 외국기업의 대 중국 직접투자액 중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 비중은 5% 미만이었으나 2005년에는 20%를 초과하는 등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한 인수합병이 급증
 - (주요내용) 동일 업종에 속한 기업 간 담합,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지방정부의 행정권력을 이용한 지역보호주의에 대해 규제
 -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목적으로 동일 업종에 속한 기업 간 카르텔을 형성하는 행위를 금지
 - 시장 지배적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예시
 - 기업 간 인수합병이나 지분취득을 통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대한 판단기준과 행위에 대해 규정
 - 지방정부가 행정 권력을 동원하여 지역 내에서 타 지역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한하거나 상품 가격이나 기술표준에 대해 차별하는 행위를 제한
- ※ 특히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대상 인수합병 추진 시에는 국가안전심사⁶⁾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6) 국가안전심사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국가안전에 관계되는 업종과 중요 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수행됨

<반독점법 규제내용과 판단기준>

독점행위 범위	규제내용	판단기준
동종 업종 기업 간 담합	'카르텔'을 형성하여 가격경쟁 저해	상품 가격, 생산량, 판매량에 대한 담합 판매시장과 원재료 구매시장 분할 신기술, 신규 설비 도입과 신 제품 개발 제한 연합하여 거래를 거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불합리한 가격으로 구매 또는 판매 원가이하의 가격으로 판매 정당한 이유 없는 거래 거부 상대방에게 불리한 강제적 거래 동등 조건의 거래당사자 차별	한 기업의 동일시장 점유율이 1/2 이상 두 기업의 동일시장 점유율이 2/3 이상 세 기업의 동일시장 점유율이 3/4 이상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기업 간 인수합병 주식취득과 계약을 통한 실질 지배 력 행사	경제력 집중에 참여한 기업들 의 시장지배력 비중 경제력 집중이 시장진입과 기 술발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와 관련 업종 타 기업에 미치는 영향
행정 권력에 의한 경쟁 제한	공권력 행사로 특정 기업의 제품구 매를 강요 타 지역 기업의 진입을 공권력으로 방해	수수료, 가격, 기술표준과 시 장진입 측면에서 차별 대우 여 부

자료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자료.

- (영향) 외국기업들은 국유기업 독점 하에 있던 주요 산업으로의 진출 기회를 획득하고 내수시장 확대의 계기를 마련할 전망
 - 국유기업의 독점 혹은 전매 분야인 전력, 통신, 담배 등 분야로 진출이 가능해져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계기가 될 전망
 - 지역 내 상업행위에 대한 지방정부의 행정적 영향력이 축소됨으로써 외국기
업의 시장진입이 더욱 용이해짐

- 국내 기업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분야에서 추가 시장 확장이 불리 하며, 특히 절대적 비교우위에 있는 업종에서 불이익이 두드러질 것임
 -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반도체, 통신, LCD, 건설기계 등 분야에서 추가 시장 확대가 제한 받을 수 있음
 - 사업 필요성에 따른 관계 회사 간 합병이나 관련거래가 제약 받음으로써 사업구조의 개편과 조직운영의 유연성 저하
 - 대 중국기업 인수합병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국가안전심사 관문은 외국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를 저해

○ 에너지절약법

- (배경과 의미) 고속 경제성장에 따른 중국 내 에너지 수요 급증과 국제 에너지 가격상승 및 대기환경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함
 - 2006년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15%를 차지하여 미국에 이은 2위를 기록
 - 2006년 기준 중국의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 효율성은 미국의 20%에도 못 미쳐 개선 여지가 충분함
 - 세계 제2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교토의정서' 협약사항에 따라 2012년까지 감축 의무는 없지만 국제사회의 신 협약 체결 요구가 강렬해짐
- (주요내용)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리 · 감독 주체와 감시대상을 명확히 하고 표준체계와 관리제도 및 위반 시 법적책임과 격려정책을 명시
 -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현급(縣級) 이상 행정기관을 관리 · 감독 주체로 하고 건축, 교통, 공공기관을 중점 감시대상으로 명시

- 에너지 절약 목표 책임제와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목표달성을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부의 인사고과에 반영
- 고정자산 투자 시 에너지 절약 관련 평가제와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를 도입
- 대체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의 개발 및 사용에 대해서는 정부구매와 세제 상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규정 위반 시에는 벌금 또는 폐쇄 조치를 취함

<에너지 절약법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관리감독 주체	현급(县级) 이상 행정기관
주요 시행대상	건축, 교통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
표준체계와 관리제도	에너지절약 목표 책임제, 평가제도
격려정책	포괄적 지원: 대체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사용 세제상 지원 :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선진 기술과 설비의 도입 정부구매지원 : 에너지 절약 관련 제품 금융기관 대출 지원 : 에너지 절약 관련 기술 개발, 제품 생산 가격 상 혜택 부여 :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
법적책임	규정 위반 시 사업인가 주요책임자의 책임을 추궁, 해당 건축물과 설비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를 취함 국가 명령으로 생산과 수입을 금지한 제품, 설비의 취급에 대해 벌금 또는 폐쇄 조치를 취함

자료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자료.

- **(영향)** 에너지절약법의 도입으로 국내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 생산업체들이 중국시장에서 약진할 것으로 전망
 - 에너지 소모가 크고 보급률이 높은 TV, 냉장고, 에어컨 등 중국시장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우리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확대 기대
 - 에너지 소비효율이 낮은 반면 저가전략에 의존하여 시장을 확보해온 중국 현지 가전업체들이 직면할 불리한 국면으로 인한 반사이익 기대 가능
-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과 에너지 소비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로 철강, 석유화학 및 교통운수 관련 업종의 고전이 예상됨
 - 우리나라 기업이 전통적으로 경쟁우위를 갖는 철강, 석유화학 관련 산업은 에너지 소모가 크므로 에너지절약법 시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목표로 유수의 외국 업체와 현지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연비 향상을 둘러싼 경쟁으로 개발 비용의 상승이 예상됨

○ 순환경제법

- **(배경과 의미)** 자원고갈 우려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과 환경파괴에 따른 비용증가에 대비하여 과잉투자를 억제하고 자원 사용 효율성을 높여 친환경, 자원절약형 산업구조로 재편하기 위함
 - 중국은 선진국에 비해 단위 당 제품생산에 필요한 철강, 전력, 시멘트의 소모량은 20% 정도 높고 광물자원 회수율과 목재 종합이용률은 각각 30%와 60%로 약 20% 정도 낮은 수준임
- **(주요내용)** '감량화, 재활용, 자원화'를 목표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정부의 행동지침, 표준체계, 강제요건, 인센티브 및 위반 시의 법적 책임을 명시
 - 지방정부의 경제발전 계획은 순환경제 발전에 유리한 방향에 일치시켜 수립 할 것을 요구

- 순환경제 표준체계와 목표책임제를 도입하고 결과에 따라 정부기관 책임자의 성과평가에 반영
 - 자원소모와 환경오염이 과도한 기업의 발전을 제한
 - 생산자 책임제를 도입하여 제품수명 주기 동안 발생하는 환경 영향에 대해 제품 생산자와 수입업자에게 경제적, 법적 책임을 추궁
- (영향) 기업들이 자원 사용 효율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자원 재활용 관련 기업들의 중국 진출과 장비 및 기술 수출이 확대될 전망
- 순환경제법의 시행으로 제품 품질뿐만 아니라 원재료 선정, 설계는 물론 제품 회수와 환경보호에 이르기까지 생산자의 책임범위가 확대되어 채산성 악화 예상
 - 중국 진출 우리나라 기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등 제조업체의 폐기물, 폐수 등에 대한 회수처리 비용이 상승
 - 또한 정부의 1회용품 가공·생산 업체에 대한 규제강화는 관련업체들의 존립 기반을 위협

○ 수오염방지법

- (배경과 의미) 수자원 부족, 수질오염의 심화, 수오염사고의 빈번한 발생 및 높은 준법비용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 식수안전을 보장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함
- 2005년 전국 7대 수계(水系)에 대한 조사결과, 27% 정도가 5급수로 판정, 3억 명 이상 농촌지역 주민의 식수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환경오염 사고 발생건수의 50% 정도는 수질오염과 관련된 것으로 장기간 악습으로 고착된 기업의 무책임한 폐수방출이 그 원인임
 - 기존 제도 하에서 위법비용에 비해 준법비용이 터무니없이 큰 것도 수오염 방지법 개정의 한 원인이 됨

- **(주요내용)** 오염물질 배출 허가제와 총량제한제를 실시하고 오염원에 대한 통제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며 수질 환경정보의 통합적 공시제도 확립
 - 중금속, 방사선물질, 병원체 등 오염물질의 직·간접적 배출과 관련된 기업체, 병원 등에 배출허가 취득과 오염물질 측량설비 설치를 의무화 함
 - 기업체, 병원 등은 오염물질 배출량과 관련하여 정부가 제정한 배출기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배출 총량을 준수해야 함
 - 수질오염에 대한 예방위주와 신속대응의 원칙하에 지방정부는 행정구역 내의 수질환경 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함
 - 중앙 정부는 환경 관련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수질환경과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수질환경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공시
 -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벌금, 사업장 폐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자원 오염으로 인한 직, 간접적 피해자는 당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제기가 가능
- **(영향)** 동법 시행은 국내 오수처리 시설, 기술 및 업체의 중국 진출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설비도입과 검사에 따른 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예상됨
 - 동법의 시행으로 국내 오수처리 시설과 정화설비 관련 업체의 중국 진출과 관련 기술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
- 수오염방지법의 발효는 수질오염 관련 업체의 오수처리 설비도입과 당국의 검사에 따른 환경비용 증가를 초래하여 채산성 악화가 예상됨
 -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석유화학, 모피, 섬유 관련 업종이 주종을 이루는 우리나라 기업의 오수처리 설비도입과 검사 비용이 대폭 증가하게 됨
 - 특히, 2007년 정부가 수정 발표한 '외자투자산업목록'을 체계화함으로써에너지 소모와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외국기업의 퇴출에 법적 근거 마련

3.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 위협요인과 기회요인

- 중국 법제환경 변화는 우리 기업들에게 위협인 동시에 기회가 됨
 - 기업소득세법의 시행은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반면, IT, 서비스, R&D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청신호가 될 것임
 - 노동계약법 시행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위협요인인 동시에 기술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가능케 하고 자동화 비율을 높여 생산성 제고의 계기가 될 것임
 - 반독점법의 시행은 시장 지배력의 확대와 M&A에는 부정적이지만 신규 사업을 개척하고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데는 유리함
 -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 관련 법규는 규제비용을 유발하나 자원절약·친환경 관련 제품과 기술의 수출과 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에는 유리함
 - 우리 기업의 무단 철수는 국가적 이미지를 훼손하고 통상마찰을 심화시키며 우리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키지만 합법적 복귀에 따른 국내 투자와 고용 확대는 분명 기회임

○ 정부의 대응

- (첨단기업의 중국 진출 지원) 국내 IT, 서비스, R&D 등 첨단 기술과 서비스업체의 중국 진출을 독려하고 지원해야 함
 - 기업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기준이 지역에서 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하이테크, 서비스, R&D 분야에 혜택 집중
 - 저임금에 의존한 노동집약 산업의 진출을 지양하고 하이테크 및 서비스 위주의 진출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
- (이전, 철수 지원) 중국 진출 기업의 사업 철수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내 복귀 혹은 중국 이외 기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사업 철수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법적,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철수절차를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해 해당 지역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조 필요
 - '출자총액제한제'와 '수도권규제' 등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규제 제도를 완화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하면,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 시 적용하는 우대세율에 상응하는 세제혜택 부여 방안 고려
-
- **(사후 관리)**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
 -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제때에 파악함으로써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을 미연에 방지
 -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 시 관련 지역과 산업에 대한 규제 위험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선도해야 함
 - **(정보시스템 구축)** 정부 차원에서 중국 경제정책 관련 정보의 수집을 강화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해야 함
 - 중국 정부 내의 경제정책 제정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정책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 기업들의 중국 경제, 산업 관련 정보 이용이 용이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기업의 대응

- **(변화를 기회로 활용)** 환경 변화는 기업들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되므로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자동화 비율을 높임으로써 노동력의 생산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중국 내 국유기업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던 사업 분야로의 진출과 내수시장 확대의 길을 적극 모색해야 함
 - 중국 업체들의 저가전략에 제동이 걸리면서 국내 업체들은 품질을 기반으로 시장 확대의 기회로 삼해야 함
 - 친환경, 자원절약형 및 하이테크 제품과 관련 기술의 수출과 연구개발센터의 설립을 통한 중국 진출을 서둘러야 함

-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업종을 전환
 - 저임금에 의존하는 가공무역 위주의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업종 전환
 - 성장 동력 확충 차원에서 롱점프(long-jump)형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전략 중심을 고부가가치의 신규 사업 분야로 이전
- **(기업형태의 전환)** 독자형태의 법인성격을 중국기업과의 합자 또는 합작 형태로 전환하고 인력, 시장의 현지화를 실현
 - 기업의 중국 현지화를 통해 외국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와 차별을 회피
 - 현지 인력의 비중을 높여 내수시장 공략에 유리한 위치 선점
 - 제품의 대외수출 비중을 축소하고 내수 비중 확대
 - 단, 경쟁업체와의 가격정보 교환이나 생산량 조율 등 ‘반독점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합작행위와 중국기업 대상 일부합병 시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사업체 이전)** 중국 내 중서부지역(동북지역 포함) 혹은 원가 경쟁력이 있는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사업체를 이전
 - 중국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세제와 행정절차상 혜택이 상존하는 중서부지역(동북지역 포함)으로 사업체를 이전
 - 글로벌 제조업 기업의 대안적 생산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과 개성공단 등 지역으로 이전
 - 단, 인프라 미비와 물류비용 상승 등 불리한 요인을 감안해야 함 **HRI**

이만용 연구위원 (danieli@hri.co.kr, 02-3669-4123)

참고문헌

河媛, 2007, “中國當前社會貧富懸殊的原因剖析”, 當代經濟 2007年 10期

李業俊、司婕, 2007, “淺析我國產業結構的變動和調整”, 當代經濟 2007年 10期

鄒桃、文先明, 2007, “關於外資併購與國家產業安全問題的探討”, 經濟師 2007年 11期

董超, 2008, “中國利用外資新趨勢”, 中國外資 2008年 1期

김주영(2007), “중국 이슈리포트”, 한국수출입은행 중국경제 모니터링 시스템, 제 2007-36호

사공목(2005), “일본 제조업 기업의 글로벌 전개와 국내회귀”, KIET 산업경제 2005년 9월호

이승신, 김용민(2006), “중국진출 우리기업 긴급 실태조사”, 한국무역협회

정상은(2007), “중국 반독점법의 파급효과는”, Chindia Journal 2007.11., 포스코경영연구소

KOTRA(2007), “2007년 중국의 외자기업 관련 주요 신규 법규와 시사점”, Global Business Report 07-004

HRI 經濟 指標

❸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중국 신 법제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E)	2008(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7.0	3.1	4.7	4.2	5.0	4.5	5.1
	최종소비지출 (%)	7.6	-0.3	0.4	3.9	4.5	4.4	4.6
	민간소비 (%)	7.9	-1.2	-0.3	3.6	4.2	4.3	4.5
	총고정자본형성 (%)	6.6	4.0	2.1	2.4	3.2	4.6	5.8
	건설투자 (%)	5.3	7.9	1.1	-0.2	-0.4	2.5	3.8
	설비투자 (%)	7.5	-1.2	3.8	5.7	7.6	7.5	8.5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	54	119	282	150	61	-30	-50
	통관기준	무역수지 (억 \$)	103	150	294	232	161	151
		수출 (억 \$)	1,625	1,938	2,538	2,844	3,255	3,718
		증가율 (%)	(8.0)	(19.3)	(31.0)	(12.0)	(14.4)	(10.5)
	기타	수입 (억 \$)	1,521	1,788	2,245	2,612	3,094	3,567
		증가율 (%)	(7.8)	(17.6)	(25.5)	(16.4)	(18.4)	(13.5)
금융	소비자물가 (평균 %)	2.7	3.6	3.6	2.8	2.2	2.5	2.8
	실업률 (%)	3.1	3.4	3.7	3.7	3.5	3.2	3.0
	원/\$ 환율 (평균 원)	1,253	1,192	1,145	1,024	955	929	915
	국고채금리 (평균 %)	5.8	4.6	4.1	4.3	4.8	5.2	5.3

내 인생 최고의 멘토를 만나다!

Creative business contents tank, Usociety

21세기는 지식 경쟁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트랜드, 나만 뒤쳐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비즈니스맨들의 창조력 충전 및 경쟁력 확대를 위한 지식 정보 콘텐츠,
 Usociety에서 만나보세요.



비즈니스 지식 정보 TV, CreativeTV.co.kr

창조의 5분, 성공의 5분! 그 5분을 위한 다이제스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Usociety의 미션입니다.
 HD VIDEO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지혜를 나누십시오.



글로벌 비즈니스의 완성, EBS 어학 프로그램

최고의 어학 강의, EBS 어학 콘텐츠! 국내 대표 강사진들의 명 강의로 구성된 3,200편 이상의 풍부한 어학 프로그램을 Usociety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Business	Conversation	Global
영어인터뷰 START 인터뷰 영어족보 비즈니스영어 모질게 new TOEIC 비겁한 new TOEIC 외	Style English Survival English 영어 말하기 START Oxford 회화 말미잘 English 外	리듬 중국어 입문 이키이키 일본어 러시아어 첫걸음 스페인어 첫걸음 터키어 첫걸음 外



차별화된 경쟁력, Competency Tools

지식노트

경제, 사회, 문화에서 저널까지
 한 눈에 보는 weekly webzine

U-Times

지식 트렌드를 손에 잡을 수
 있는 콘텐츠 매거진

U-Planner

프로페셔널리즘의 시작,
 웹 프랭클린 플래너

eBook

비즈니스에서 교양까지,
 신간으로만 채워지는
 digital library

